서 울 특 별 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731-6156-8 / 전송 731-6562
처리부서 : 법무담당관실(시청본관 3층) 담당 김철수

문서번호 법무 11010-810
시행일자 1996. 5. 2.
(경유) (제1안)
수신 내부결재
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
기획관리실장	전결	
법무 담당관		
법 제 계 장		
기안	김철수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 발령

1.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첨부 예규안 각 1부. 끝.

(제2안)
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예규 시보게재

1.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기 바람.

첨부 서울특별시예규 제 623 호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(제3안)

수신 농촌지도소장

제목 예규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을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토록 조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.

가. 발령예정일 : 1996. 5. 6

첨부 서울특별시 예규 제 623 호(생략). 끝.

검열 1996. 5. 2 통제관

서 울 특 별 시 장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지침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6년 5월 6일

서 울 특 별 시 장 조

서울특별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지침안

1. 제정이유

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의 운용조건과 원칙 및 대출취급기관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대출조건 및 한도액

○ 대하금리 : 연 4.0%

○ 대출금리 : 연 5.0%

○ 대출취급 수수료 : 1.0%

○ 대출기간 및 대출금액 : 3년(거치기간포함) 1인당 500~2,000만원이하

나. 자금의 용도 및 융자절차

○ 융 자 금 : 농업소득증대 및 시범영농을 위한 영농자금

○ 지 원 금 : 농촌지도자 국내외 연수비용

○ 융자절차 : 추천기관이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 대출기관에 통보

다. 대출원리금 상환 및 자금의 기한전 회수

○ 원금 : 거치기간 경과후 2년간 매11월에 균등분할 상환

○ 이자 : 연2회 대출일로부터 6개월기준 후취

○ 목적외 사용과 목적달성이 불가능할때 기한전 회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조례(서울시 조례제2962호) 및 동조례 시행규칙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지침안

제 1 조(목 적) 이 지침은 농촌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(이하 "자금" 이라한다)운용조건과 원칙 및 대출취급기관 (이하 "대출기관" 이라 한다)의 준수사항등을 정함으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리) ①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(이하 "추천기관"이라 한다)가 대출기관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"대출"이라함은 대출기관이 농촌지도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"지원"이라함은 추천기관 및 대출기관이 농촌지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3 조(대출 및 지원대상자) 자금의 대출과 지원 대상자는 추천기관이 선정하여 통보한 자로 한다.

제 4 조(대출조건 및 한도액) 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

1. 대하금리 : 연 4.0%
2. 대출금리 : 연 5.0%
3. 대출취급 수수료 : 연 1.0%
4. 대출기간 : 3년(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)
5. 대출금액 : 1인당 500만원에서 2,000만원이하로 한다.

제 5 조(자금의 용도)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융자금 : 농업소득 증대 및 시범영농을 위한 영농자금
2. 지원금 : 농촌지도자 국내외 연수비용

제 6 조(융자절차) ① 추천기관은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대출기관에 통보하며 대출기관은 채권보전 조치만을 취한 후 대출한다.
다만 신용대출로서 채권보전상 신용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출기관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 할 수있다.

② 대출기관은 제1항에 의거 심사한후 융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.
이경우 추천기관에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대출기관은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추천기관이 추천 통보한 날부터 4월 이내에 대출취급을 완료하여야 하며, 동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금액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. 다만 추천기관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연장기한을 대출 취급 유효기간에 포함시키되, 최초 추천통보일로 부터 6월을 초과 할 수 없다.

④ 대출기관은 정해진 융자기간(할부금의 상환기일 포함)을 임의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없다.

제 7 조(대출원리금 상환 등) ①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2년간 매 11월에 균등분할 상환한다.

② 자금의 이자는 연2회 대출일로부터 6개월 기준 후취하며 융자기간 만료전에 상환되는 자금에 대한 이자는 그 원금 상환일에 납입한다.

③ 자금의 이자계산 기간은 대출일로 부터 납입일 전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한다. 다만, 대출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로 한다.

④ 원리금의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납입한다.

⑤ 대출원리금의 기한내 상환이 지체한때에는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와 목적외 부적합하게 사용되어 회수한 자금은 기금지원당시 취급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.

제 8 조(자금의 기한전 회수) 대출기관은 다음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하여야 한다.

1.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
2.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
3. 추천기관이 자금의 회수조치를 취할 때
4. 기타 대출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할 때

제 9 조(대출금 관리) 대출기관은 이지침 및 협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관리자금 보유금지) 대출기관은 이 자금을 관리자금으로 보유할 수 없다

제 11 조(기 타) ① 이 지침의 운용과 관련하여 추천기관이 변경하여 통보한 때에는 변경된바에 따른다.

②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지침 및 관계규정 등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출기관의 대출관계 제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입령한 날부터 시행한다